

디지털 통상 현안과 한국의 대응

박가희 연구위원(gaheebak@korcham.net)

이홍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honglee@korea.ac.kr)

한미 무역협상의 기본틀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후속 실무협상에서는 한국을 향한 디지털 통상압박 수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비판하면서 필요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31일 공개한 NTE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디지털 관련 사항이 다수 언급되었다. 향후 실무무역협상 등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디지털 통상현안이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본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 확산이 무역 구조와 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국이 '디지털무역장벽'으로 분류한 내용이 한국의 디지털 무역 환경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디지털 무역은 데이터와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 기술 패권, 데이터 안보 등을 명분으로 각기 다른 규범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OECD Digital STRI에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NTE 보고서에서 '디지털무역장벽'으로 적시한 '데이터 현지화', '위치기반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망사용료' 등은 신규 쟁점으로 잠재적 갈등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외부 압력에 의해 단기적인 논의와 쟁점에 매몰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 등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글로벌 규범 참여 확대(신규 협정과 기존 FTA 개정 병행), △데이터·AI 역량 확보와 핵심 인프라 자립, △개방과 기술주권의 사이의 균형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디지털 무역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I. 서론

□ 데이터 처리 및 저장 비용의 감소,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경제 영역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킴(OECD, 2022)¹⁾

○ 2020년 기준 OECD 국가 인구의 90%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인터넷과 연결된 장치의 수는 무려 200억 개에 달함(AIOIT,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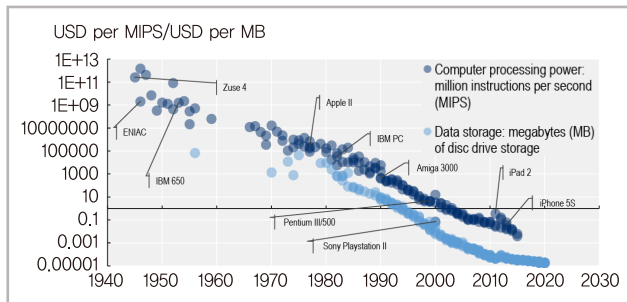
* 본 자료는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ustainable Growth Initiative)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1) OECD(2022), "Measuring the Value of Data and Data Flow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345(December 2022)

2) AIOTI (2020), "IoT and edge computing convergence", No. 19 May 2020, AIOTI blog, <https://aioti.eu/aioti-strategic-foresight-through-digital-leadership-iot-and-edge-computingconvergence/>.

- 또한 미국 특허 및 상표청에 등록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관련된 특허 건수는 2007년 74,677건에서 2023년 211,740건으로 증가하여, 연간 약 183.54%의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³⁾

[그림1] 데이터 처리 및 저장 비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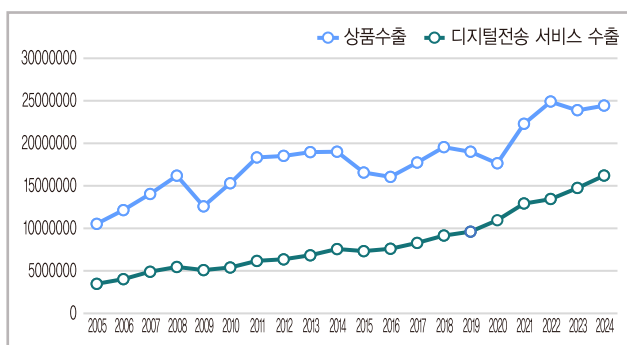


자료: OECD(2022) Figure 2.1(p. 12) 재인용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 무역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모하고 있음

- 전통적인 상품 교역에서 나아가 데이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등 무형자산이 국제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그림2] 상품 및 디지털전송 서비스수출 금액 추이 (단위: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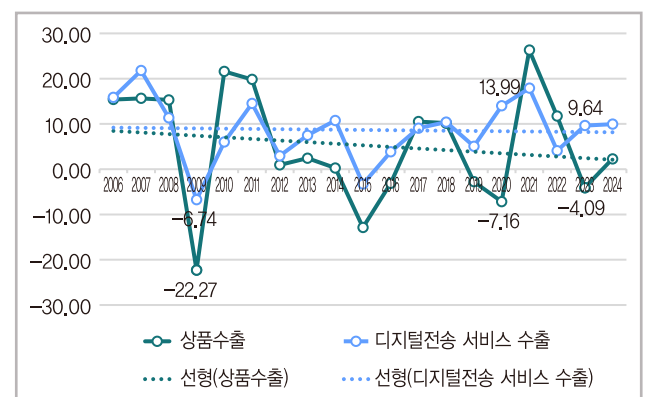
자료: WTO Statistics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특히 디지털전송 서비스 수출(Digitally Delivered Services Exports)은 글로벌 금융위기

(2009)와 코로나 팬데믹(2020) 같은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유지하며, 상품 수출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흐름은 무형자산 중심의 교역 구조가 국제무역의 경기 민감도를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그림3] 상품 및 디지털전송 서비스수출 연간 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WTO Statistics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데이터의 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디지털 무역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규제와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전(information warfare)⁴⁾ 측면에서 데이터 획득, 활용, 보안을 포괄하는 '데이터 안보'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강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음⁵⁾
- EU는 역내 시장 보호와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해 포괄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은 부문별 규제와 사후적 경쟁법 집행을 병행하면서 해외 시장의 장벽 완화를 요구하는 개방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

3) Artificial Intelligence Patent Dataset from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바탕으로 저자 계산

4) NATO에 따르면 정보전은 정보공간 장악, 정보접근 보호, 정보시스템 파괴, 정보흐름 교란 등을 포함하며, 인터넷은 특정 국가와 국제 사회에 데이터 수집, 정보방어, 교란의 가능성을 용이하게 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함(deepportal.hq.nato.int)

5) EU·미국 등 주요국의 디지털 무역 규제·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II장에서 다룰 예정임

- 이러한 조치는 데이터를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닌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WTO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무역을 포함한 새로운 통상 규범을 마련하는 양자·복수국간 협정(bilateral·plurilateral agreement)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UK-Singapore Digital Economy Agreement, UKSDEA) 등 주요국간 디지털 협정 체결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한국도 싱가포르, 영국과 디지털 협정을 체결하고, DEPA에 가입하는 등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GDP 대비 수출입비중⁶⁾이 높은 한국은 디지털 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AI 확산, 데이터 활용 확대 등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망라하여 무역 구조를 다변화할 기회로 작용
- 디지털 무역은 새로운 수출품목과 시장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편승해야 함
- 특히 디지털 교역과 관련된 규범 및 규제 변화는 시장 접근성, 기술 표준, 데이터 이전 요건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므로, 이를 선제적으

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해외 시장 적응과 새로운 수출 경로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임

□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이 데이터 기반 경제와 디지털 무역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디지털 협상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제Ⅱ장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인한 무역 구조 변화와 이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을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디지털 무역 협정의 채택 현황 및 글로벌 통상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함
- 제Ⅳ장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무역 규제 환경과 제도적 대응 현황을 분석함
- 제Ⅴ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II. 디지털 경제 심화에 따른 무역 구조 변화와 주요국 대응

1) 디지털 무역의 개념과 의의

□ 디지털 무역은 전통적인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는 달리 디지털 기술 기반의 거래전송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현재 국제적으로 합의된 단일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음

6) 69.3%(수출 34.4%, 수입 34.9%). 명목 GDP 대비 관세청 통관자료 기준

- OECD⁷⁾에 따르면,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되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 배송되는 상품 및 서비스와 스트리밍 서비스 등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거래를 디지털 무역으로 정의
- WTO⁸⁾는 ICT상품, 금융 서비스, 통신,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디지털 무역의 범주에 포함
- 2019년 국제기구(OECD, WTO, IMF, UNCTAD)는 디지털 무역을 ‘디지털로 주문되거나 디지털로 전달되는 모든 국제무역’이라는 통계적 정의를 공식적으로 확립⁹⁾

□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주문·거래를 통한 전통적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공존하는 형태

- 디지털 무역은 기존 전통적 무역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상품 및 서비스의 이분법적 구분을 약화시키고 있음

2) 디지털 경제 심화에 따른 무역 구조 변화

- González and Ferencz(2018)¹⁰⁾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무역의 규모와 범위를 확장하고 참여를 용이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거래의 복잡성도 증가시켰다고 지적함
- 특히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cification of manufacturing)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교역 증가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남

[그림4]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의 기본 개념 및 통계적 정의



자료: UNCTAD(2023) p.14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7) <https://www.oecd.org/en/topics/digital-trade.html>

8) 온라인으로 주문된 상품의 배송을 포괄하는 전자상거래는 더 큰 범주로 보고 있음(WTO(2022), 'Digital Trad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9) UNCTAD(2023), 'Handbook on Measuring Digital Trade', (<https://unctad.org/publication/handbook-measuring-digital-trade>)

10) González, J. L. and J. Ferencz(2018), "Digital Trade and Market Openess", OECD Trade Policy Papers No.217

□ 제조업의 서비스화란 제품 생산 과정에 정비, 판매, 연구 등 서비스 요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현상을 의미¹¹⁾

- 최근 디지털화 진전으로 제조업 내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OECD 국가간 무역에서 2000년 대비 2020년 서비스 기여도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비중은 뚜렷하게 상승(7.1%→8.7%)
- 정보통신, 전문서비스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가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

[표 1] OECD 국가간 제조업 총수출에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단위: US million dollar, %)

	2000	2010	2020
전체	523,237.1	1,529,937	1,625,946
제조업	328,966.7 (62.87)	910,604.2 (59.52)	969,504.9 (59.62)
서비스	164,121.8 (31.38)	499,290.9 (32.63)	539,948.5 (33.21)
운송	18,756.98 (3.58)	65,664.05 (2.14)	66,613.66 (4.10)
정보통신	12,542.59 (2.40)	32,741.66 (2.14)	40,734.83 (2.50)
전문서비스	37,215.49 (7.11)	117,122.3 (7.65)	141,446.7 (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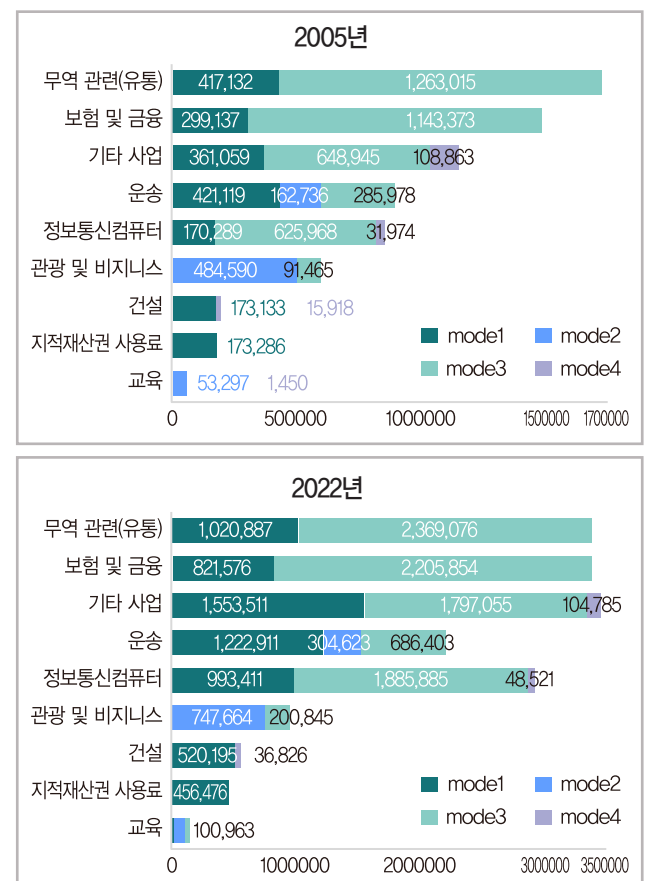
자료: OECD Tiva 2023 edition

□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화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교역이 확산되는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됨

- 실제로 서비스 교역 방식을 보면, 2005년 대비 2022년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서비스 공급 방식인 mode 1¹²⁾이 크게 확대됨

-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기반 서비스, 핀테크 등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교역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추세를 명확히 보여줌
- 지식재산권과 데이터 활용을 토대로 한 무형자산 서비스 교역이 증가하는 한편, 원격의료와 같이 과거에는 비거래재로 여겨졌던 서비스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활발히 거래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기존에 글로벌 경쟁력이 제한적이었던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물리적 해외 진출 없이도 국경 간 디지털 교역을 통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

[그림5] 주요 서비스 부문 공급방식별 서비스 수출 구조 (단위: US million dollar)



자료: WTO statistics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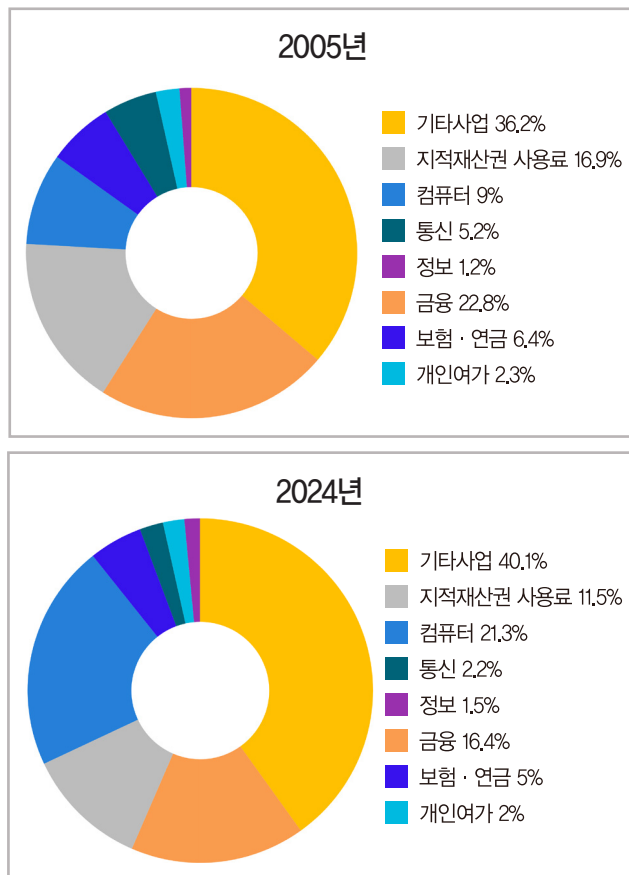
11) Miroudot, S. and C. Cadestin (2017), "Services In Global Value Chains: From Inputs to Value-Creating Activities", OECD Trade Policy Papers, No. 197,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465f0d8b-en>, [부록그림 1] 참조

12) WTO 설립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서비스 거래방식은 Mode 1~4로 구분할 수 있음 ①Mode1: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으로, 서비스 공급자(수출자)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각각 자국에 있으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방식 ②Mode2: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로,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의 국가로 이동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관광, 유학 등) ③Mode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는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의 국가로 자본을 투자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은행 등 금융업 부문의 법인·지사 설립 경영활동) ④Mode4: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으로,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의 국가로 이동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건설 인력 이동, 해외 공연 등)

□ [그림 6]의 2005년 디지털 전달 서비스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금융(22.8%), 저작권 사용료(16.9%) 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4년에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 비중이 21.3%로 크게 성장

- 이는 전통적 디지털 전달 서비스(금융, 보험, 통신 등)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반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디지털 교역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그림6] 디지털 전달 서비스 수출 구조 변화



자료: WTO statistics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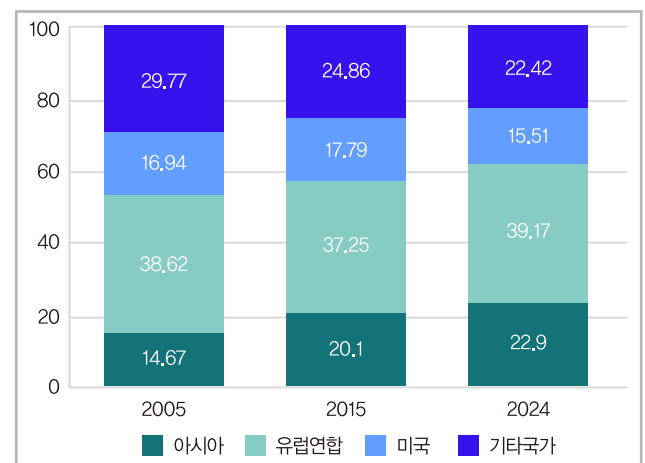
3) 지역별 디지털 무역 구조와 주요국 정책 동향

□ 전세계 디지털 전달 서비스 수출 구조를 분석해 보면, 최근 20년간 아시아와 유럽연합의 비중

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미국과 기타 국가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아시아의 비중 확대는 중국과 인도의 성장세에서 주로 기인
 - 중국은 2005년 1.4%에서 2024년 4.6%로, 인도는 2005년 3.0%에서 5.8%로 각각 상승
- 2024년 기준 39.17%를 차지하는 EU의 경우, 단일시장 체제를 바탕으로 역내 데이터 이동 장벽이 낮아 역내 거래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미국의 비중 감소는 CLOUD Act(2018), EO 14117(2024) 등 자국 내 데이터 통제 강화 정책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부문의 아시아 지역 아웃소싱 확대에서 기인
- 기타 국가는 2005년 29.77%에서 2024년 22.42%로 감소하여,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의 심화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음

[그림7] 디지털 전달 서비스 수출 구조 변화 (단위: %)



자료: WTO statistics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미국의 비중 감소와 유럽의 강세는 데이터 통제 강화와 단일시장 내 규제 통일 등 정책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주요국의 디지털 무역 정책은 [표 2]와 같이 요약됨¹³⁾

- EU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디지털 시장법·서비스법(DMA/DSA), 데이터법(The Data Act) 등을 통해 데이터 국외 이전, 플랫폼 규제,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제 중심 접근법을 구축
- 미국은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내세우면서도 CLOUD Act, 행정명령 14117 등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접근과 해외 이전을 통제하는 안보 및 패권 중심의 관리 전략을 병행
-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DSL), 개인정보보호법(PIPL) 등을 통해 데이터 및 설비 현지화를 엄격히 요구하는 안보 중심 규제 체제를 운영
-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규범에 참여하면서 데이터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고, 국제 협상에서 소스코드·알고리즘 공개 금지 조항 등 통상 쟁점에 적극적으로 대응

□ 세계 각국은 데이터 정책의 목적과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는 ①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 ②데이터·설비 현지화 의무, ③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공개 요구, ④클라우드·플랫폼 규제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제도를 점차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제들은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표 2] 주요국 디지털 정책 동향

국가	주요 정책/법제	방향
유럽 연합	- GDPR(2018) - DMA/DSA(2022) - Data Act(2023)	- 규제 중심 - 디지털 주권 강조
미국	- CLOUD Act(2018) - EO 14117(2024)	- 개방 표방 - 기술우위 위한 안보 목적 통제 병행
중국	- 네트워크안전법(2017) - 데이터보안법(2021) - 개인정보보호법(2021)	- 데이터 국가 자원화 - 안보 우선
한국	- 데이터 기본법(2021)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3)	- 글로벌 규범 참여 - 활용과 보호 균형
일본	- DFFT(2019) - 개인정보보호법	

III. 디지털 무역 협정 동향과 주요 쟁점

□ 전세계적으로 상호연결된 세계를 뒷받침하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은 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우려도 동시에 야기함 (Casalini, González and Nemoto, 2021)¹⁴⁾

□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확산은 무역 규범에서 새로운 쟁점들을 야기했으며, 이러한 쟁점들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최근 다자 및 양자 차원의 디지털 무역 협정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음

- 본 장에서는 최근 채택된 디지털 무역협정의 주요 동향과 핵심 쟁점들을 정리

1) 디지털 무역 협정 채택 현황

□ 최근 체결된 디지털 무역 협정은 기존 FTA의 전자상거래장(chapter)에서 시작하여, CPTPP, USMCA 등 고수준 규범을 포함한 지역협정과 DEPA 같은 디지털 특화 협정으로 진화해왔음

13) 상세 내용은 [부록표 1] 참조

14) Casalini, F., J. L. González and T. Nemoto(2021), "Mapping commonalities in regulatory approaches to cross-border data transfers", OECD Trade Policy Papers, <https://doi.org/10.1787/ca9f974e-en>

- [표 3]은 주요 디지털 협정의 채택 현황과 특징을 간략히 정리한 것임
- 2020년 최초의 디지털 특화협정 DEPA 체결로, 데이터 자유·디지털 신뢰·혁신 협력을 제도화하는 새로운 모델이 등장
- USJDTA(2019), USMCA(2020)는 CPTPP 규범을 확산시킨 대표적인 사례

□ 한국은 KSDPA(2023)을 통해 최초로 디지털 특화 협정에 참여하고, 같은 해 DEPA에 가입하였음

-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는 주로 WTO 전자상거래 모범 규범에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원활화 관련 규범에 중점을 두고 논의되어 왔음
- 그러나 데이터 이전과 설비 현지화 같은 최근의 주요 쟁점에 대한 규정은 아직 불충분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

[표 3] 주요 디지털 협정 채택 현황

약칭	정식명칭	체결국	주요 내용 및 특징
EU-Japan EPA	EU-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유럽연합-일본	• 2019년 발효 • 데이터 관련 직접 조항은 없으나 적정성 결정을 통해 데이터 이전 허용 •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권 등 포괄적 경제 통합
EU-UK TCA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유럽연합-영국	• 브렉시트(2018) 이후 체결 • 2021년 발효 • 데이터 이전 한시적 허용 후 EU 적정성 결정으로 전환 • WTO 전자상거래 모범 규범 수준 유지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	• 미국 탈퇴 후 개정, 2018년 발효 • 디지털 챕터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서버현지화 금지 등 포함 •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 포함
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한국	• 2020년 발효, 최초의 디지털경제 특화 협정 • 핀테크, AI 등 기술협력 • 데이터 이동 자유, 설비 현지화 금지 포함 • 모듈식 구조로 신규국가 참여 용이
UK-Singapore DEA	UK-Singapore Digital Economy Agreement	영국-싱가포르	• 2022년 발효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알고리즘 투명성, 전자 송장, 전자결제 활성화 등 포함
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미국-멕시코-캐나다	• NAFTA 개정 후 2020년 발효 • 디지털 무역 챕터에서 CPTPP 수준 이상의 규범 포함 • 국경간 데이터 이전, 소스코드 접근 제한 금지 등 명시
USJDTA	United State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미국-일본	• 2019년 체결, 디지털 무역 특화 • 데이터 자유 이동, 서버 현지화 금지 등 포함
KSDPA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한국-싱가포르	• 2023년 발효, 한국 최초 디지털경제 특화 협정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설비현지화 요구 금지, AI·핀테크 등 원활화 포함 • DEPA 일부 모듈 준용

2) 디지털 무역 규범의 글로벌 쟁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면서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확보, 지식재산권 보호,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규제 등 다양한 정책 목표가 서로 얽혀있음

○ 이에 따라 데이터 국외 이전, 설비 현지화, 소스코드 공개, 플랫폼 규제 등이 산업 및 안보 측면의 보호와 개방의 균형을 둘러싼 글로벌 쟁점으로 부각됨

① 데이터 국외 이전(cross-border data flows)

□ 국가 간 데이터 이전의 허용 범위와 제한에 관한 규범이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Nigel and Dascoli(2021)¹⁵⁾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62개국에서 144건의 데이터 이전 제한 조치가 도입되었으며, 이중 70%는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및 현지 저장을 요구하고 있음(OECD, 2022)

○ EU는 GDPR을 통해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제한하고,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

○ 중국은 데이터 현지 저장 의무를 부과한 반면, 미국, 일본, 싱가포르의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옹호

② 데이터 · 설비 현지화(data/server localization)

□ 자국 내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 저장 및 처리를 강제하는 규정으로, 외국 기업의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클라우드 ·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

○ 중국과 러시아는 데이터 · 설비 현지화 정책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

○ EU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반면, 미국과 싱가포르는 설비 현지화 요구를 명시적으로 금지

③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공개(source code disclosure)

□ 정부가 기업의 소스코드와 알고리즘 공개 및 검증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안보 및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과 기업의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보호 사이의 갈등 야기

○ CPTPP, USMCA 등 주요 무역협정에서는 ‘소스코드 공개 강제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④ 망사용료, 클라우드, 플랫폼 규제(digital platforms and fair use)

□ 글로벌 플랫폼, OTT 기업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클라우드 사업자 규제, 플랫폼 공정거래 등을 포괄하는 규제로, 한-미 디지털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

○ 한국과 EU는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중점

○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자국 빅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자유를 주장하며 개방을 압박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시장 독점 억제와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이중적 접근전략 추진

⑤ 주요 사례

□ ‘25년 4월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NTE)¹⁶⁾에서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집중 조명¹⁷⁾, 향후 한미 디지털 무역협정 협상에서 개방 요구와 국내 규제 간 충돌이 예상됨

○ 한국이 부과하는 망사용료가 넷플릭스, 구글 등 미국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견해

15) Nigel, C. and L. Dascoli(2021), “How Barriers to Cross-Border Data Flows are Spreading Globally, What they Cost, and How to Address Them”,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1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17) USTR(2025), “2025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데이터 현지화, 망사용료 부과, 클라우드와 통신장비 인증 등의 영역에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
- 2025 NTE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현지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가핵심기술의 역외 클라우드 사용제한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
- 위치 기반 데이터, 망사용료 등은 2024년에도 지적된 사안으로, 교통 업데이트, 내비게이션 등과의 연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국 콘텐츠 공급업체는 한국 콘텐츠 공급업체의 인터넷서비스 공급 겸업으로 인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
- 한미 디지털 통상 협상 재개 시 NTE 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디지털 규범 개선을 요구할 전망

□ EU와 미국, EU와 중국은 데이터 이전을 둘러싼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안보’ 프레임의 충돌로 글로벌 규범 형성의 근본적 장애에 직면

- EU의 GDPR(역외 데이터 이전 제한)과 미국의 CLOUD Act(해외 데이터 접근)가 직접적으로 상충
-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Schrems II를 통해 ‘Privacy Shield¹⁸⁾’가 무효화되며 양국 간 데이터 이전의 법적 불확실성이 심화
- 이후 ‘EU-US Data Privacy Framework(2023)’를 마련했으나 근본적인 불신은 여전히 잔존
- EU의 GDPR과 중국의 DSL, PIPL이 데이터 이전 부문에서 충돌하며 기업 활동에 제약
- EU 집행위원회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소통메커니즘(Cross-Border Data Flow Communication Mechanism)을 가동하고 데이터 규제 완화를 모색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아일랜드 정부가 중국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해 EU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 당국 간 갈등 지속

□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싱가포르, 일본 등 개방형 모델과 중국의 통제형 모델이 대립하며 지역 내 디지털 경제 질서의 분절화 심화

- 싱가포르 주도의 DEPA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자유화를 지향하나, 중국은 디지털 주권을 강조하고 있음

[표 4] 디지털 무역 규범 쟁점별 주요 사례

쟁점	주요 사례	통상적 함의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	EU-미국 • EU GDPR: 역외 데이터 이전 제한 • 미국 CLOUD Act: 해외 데이터 접근권 주장	개인정보 보호와 법집행 권한 갈등
설비 현지화	중국-싱가포르, 일본 • 중국: 데이터 현지 저장, 보안 심사 의무화 • 싱가포르, 일본: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과 신뢰 주도	아시아 지역 내 개방형 모델과 통제형 모델 대립 → RCEP 등 협정 수준의 제약
소스코드 · 알고리즘 공개	• CPTPP, USMCA 규범 (공개 강제 금지) • 일부 국가는 안보 · 투명성 확보 명분으로 공개 요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정부의 규제 사이 균형 필요
망사용료 · 플랫폼 규제	미국-한국 • 미국 NTE 보고서	미국은 대외적으로 개방 요구, 대내적으로 빅테크 규제 병행 이중적 접근

IV. 한국의 현황과 정책 대응

1) 디지털 서비스 제한 지수로 본 한국의 위치

- 디지털 서비스 제한 지수(Digital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Digital STRI)¹⁹⁾는 각국의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제 장벽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평가 도구

18) 2016년 발효된 EU와 미국 간 상업적 목적을 위한 개인 데이터의 교환을 규제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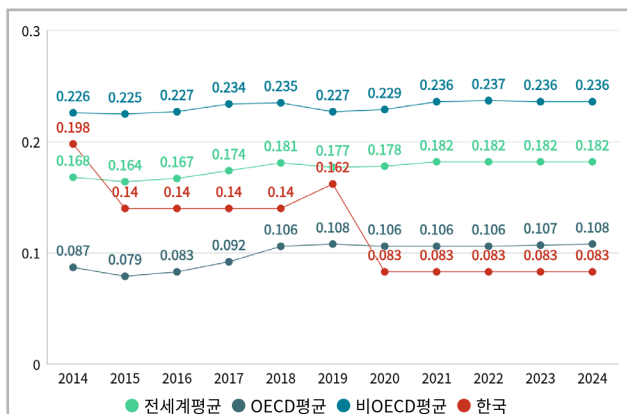
19) Ferencz, J. (2019-01-23), “The OECD Digital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OECD Trade Policy Papers, No. 221,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16ed2d78-en>

- 인프라·연결성, 전자거래, 결제시스템, 지식재산권, 기타 장벽 등 5개 영역에서 국가별 디지털 무역 규제를 0~1 사이의 값으로 산출
 - 규제 존재 시 1, 부재 시 0의 값을 입력한 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가중치를 반영하여 집계
 - 값이 높을수록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제한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
- 44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하며, 각국의 디지털 무역 규제 환경을 비교·진단하고, 정책 개혁 및 국제 협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님

□ OECD Digital STRI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 수준은 전 세계 평균과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세부 영역별(인프라·전자거래·결제·지식재산권)의 최근 5년 평균값 역시 동일한 경향을 보여, 한국의 디지털 무역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²⁰⁾

[그림8] 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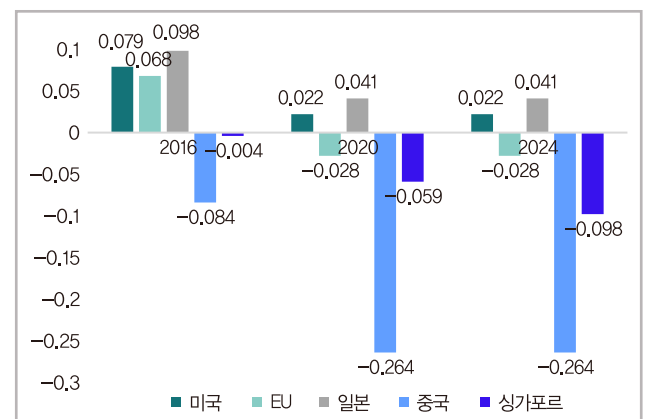


자료: OECD Data Explorer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한국의 Digital STRI를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개방 수준을 보임

- 2016년에는 미국·EU·일본 대비 규제가 다소 높았으나, 2020년 이후에는 EU²¹⁾보다 개방적이고 미국·일본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 EU의 경우 2018년 이후 도입된 DMA/DSA, 데이터 법(The Data Act)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중국과의 격차는 2020년 이후 -0.264 수준으로 크게 벌어져, 한국의 개방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중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데이터 주권' 확보를 목적으로 자국 안보를 최우선시하여 상대적으로 개방도가 낮은 상황

[그림9] 주요국과의 Digital STRI 차이



주: Digital STRI 차이는 (한국-대상국)으로 계산하였으며, 양(+)의 값은 한국이 상대국보다 규제가 더 강한 것을, 음(-)의 값은 한국이 더 개방적인 것을 의미함

자료: OECD Data Explorer 바탕으로 저자 작성

□ Digital STRI 차이는 단순히 개방도의 높고 낮음을 우열로 판단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 간 균형 유지의 중요성을 드러냄

-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반면, EU와 중국은 더 제한적인 접근을 보이는데, 이는 각국의 고유한 산업 구조와 안보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

20) [부록표 2] 참조

21) 몰타, 키프로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는 데이터 부족으로 분석에서 제외했으며, 2020년 이후 시점은 영국 탈퇴를 반영

- 한국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실히 준수하면서도, 동시에 국내 안보 상황과 대상국의 정책 기조를 세심하게 고려한 균형 잡힌 디지털 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함

2) 국내 데이터 관련 법제 논의 동향

□ 한국은 데이터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EU 규범과의 조화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음

- 데이터 기본법 제정(2021)²²⁾, 공공데이터법 개정(2023)²³⁾,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3)²⁴⁾ 등을 통해 데이터 개방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함
- 이러한 제도 개선은 EU GDPR과의 정합성을 크게 높였으며, 2023년 EU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획득함으로써 데이터 이동의 원활화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둠

□ 미국은 NTE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국내 규제와 긴장 관계를 형성

- 미국은 2023년부터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으며, 2024년부터는 망사용료 부과, 데이터 이전 제한 등을 구체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
- 2025년에는 데이터 현지화, 위치 기반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역외 클라우드 사용 제한 등으로 지적 범위를 확대
-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²⁵⁾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나, 미국의 요구와 상

충될 가능성이 높아 양자 간 협상에서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은 NTE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규제가 구글, 애플, 메타 등 자국 기업에 차별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
- 한국은 소상공인 보호와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수수료 상한제, 계약조건 사전고지, 검색 노출 투명화 등의 조치를 도입하려 하지만, 미국은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내 규제 필요성과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가 충돌하면서, 통상 협상에서 상호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3) 디지털 협상 참여 현황

□ 한국은 2023년 한-싱가포르 KSDPA 체결을 통해 최초로 디지털 특화협정에 참여했음

- 2023년 한-영국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 과 DEPA 가입으로 다자·양자 차원의 디지털 협정 네트워크를 확장하였음

□ 디지털 챕터를 포함한 다자 협정 참여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

- CPTPP 가입은 농수산업 개방 문제와 역내 정치적 상황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서버 현지화 금지 등 고수준 규범을 포함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님
-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무역 필라²⁶⁾에 참여하여 미국 주도의 디지털

22) 데이터의 정의와 이용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데이터 개방·거래·활용을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한 기본법. 데이터자산 보호와 품질관리 등 핵심 사항도 함께 다룸

23) 모든 공공기관 및 행정 데이터의 원칙적 개방, 체계적인 품질관리 및 표준화 의무화,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둠

24)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개인정보 처리 기준의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 과징금 상한선 대폭 상향(전세계 매출액 3%까지), 개인정보 이동권 신설 등으로 EU GDPR과의 실질적 정합성 확보

25) 플랫폼-입점사업자(B2B) 간 불공정 행위(일방적 조건 변경, 차별, 지연 등)를 규율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으로, 일부 안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도 포함. 공정위가 2021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논의가 시작되었고, 한미 통상 마찰 우려로 2025년 현재 계류 중

26)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는 2022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경제 협력 틀로,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필라(Pillar)로 구성됨. 이 중 무역 필라(Pillar 1)는 데이터 이동 자유, 디지털 무역, 노동·환경 기준 등을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규범 논의에 동참하고 있으나, 미국 내 정치적 이유로 협상 타결은 계속 지연되고 있음

-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들은 전자상거래 조항을 부분적으로만 포함하고 있어, 최근 디지털 무역의 핵심 쟁점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음
- 한-미 FTA, 한-EU FTA 등에서는 전자적 전송 무관세, 전자서명 효력 인정,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기본적 규범 수준에 머물러 있음²⁷⁾
- 따라서 한국은 새로운 디지털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와 협정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4) 글로벌 기술보호 추세 속 한국의 과제

-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자국의 산업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 및 데이터 보호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은 글로벌 규범 참여 확대와 국내 산업·보안 보호라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해 있음
- 나아가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활용 역량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면서, 디지털 무역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요구됨
- 결국, 한국의 디지털 무역 정책은 단순한 개방 확대나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국제 규범, 국내 산업 발전, 그리고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수적임

V. 결론 및 시사점

- 본 보고서는 데이터 기반 경제의 확산과 디지털 무역의 부상이라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음
- 디지털 무역은 기존 상품, 서비스 교역의 범위를 넘어 데이터와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구조화
- 이에 따라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 기술 패권, 데이터 안보 등을 이유로 각기 다른 규범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잠재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
- 한국은 OECD Digital STRI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상이한 규범 환경에 직면해 있음
- 특히 미국은 NTE 보고서를 통해 망사용료, 데이터 이전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EU는 GDPR, DMA/DSA를 통해 데이터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중국은 데이터 현지화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국제 규범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플랫폼 공정화법과 같은 국내 규제 논의를 병행하고 있어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상황
-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향후 디지털 무역 통상과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27) 상세 내용은 [부록표 3] 참조

① 글로벌 규범 참여 확대와 국내 법제간 정합성 확보

- 한국은 EU의 GDPR, 미국의 CLOUD Act, 중국의 데이터 안보 규범 등 다양한 글로벌 규범 환경 속에서 자국 제도를 국제 표준과 조화롭게 정립해야 함
 - 플랫폼 공정화법 등 국내 규제 도입 논의는 결국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지속 가능하며, 통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CPTPP, IPEF 등 신규 협정 참여를 적극 추진하면서, 기존 FTA의 전자상거래장을 디지털 챕터로 확대·개정하는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국내 법제간의 정합성과 일관성도 확보해야 함
 - 데이터 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각각의 규제가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규제 파편화와 중복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

②데이터·AI 활용 역량 확보

- 공급망 동맹 및 디지털 협력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소버린AI(sovverign AI)²⁸⁾와 클라우드 인프라 자립 등 핵심 기술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함
 - 이를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전문 인력 육성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
- 이러한 기반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협상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음

③개방과 기술주권 간 균형 전략

- 자율주행, 생성형 AI 서비스, 클라우드 운용 등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분야에서는 개방

과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국가 안보와 전략산업의 핵심 역량은 반드시 보호해야 함

- 한국은 디지털 무역 정책에서 완전한 개방이나 폐쇄적 보호주의를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개방과 핵심 기술주권 확보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함
 - 특히, OECD Digital STRI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높은 개방성을 기반으로 국제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파트너 국가'로 자리 잡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④국제 표준화 선도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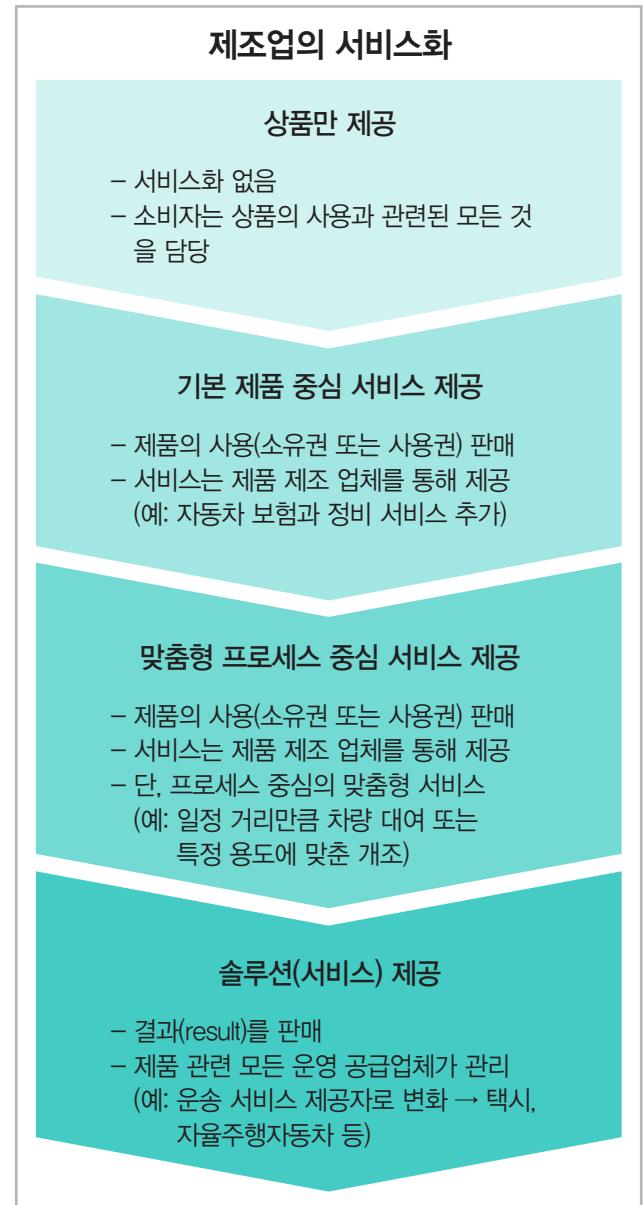
- 한국은 그동안 주로 국제 규범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왔으나, 이제는 AI 윤리, 데이터 보안, 디지털 ID 등의 영역에서 국제 표준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규범 수용자가 아닌 표준 제안자 또는 국제 협상을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장기적 디지털 통상 전략의 핵심 과제임
- 2025년 10월 예정된 APEC 정상회의는 WTO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현 시점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에 대한 대안적 논의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2025년 8월 개최된 디지털·AI 장관 회의에서 이미 혁신, 연결성, 안전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과 AI 협력의 방향성의 논의된 만큼, 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보다 구체적인 합의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합의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APEC 내 디지털 규범 논의에서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28) 특정 국가나 지역이 자국 내 데이터·인프라·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해 독립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인공지능으로, 데이터 주권과 기술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

⑤기업의 적극적 역할 강화

- 디지털 무역 규범은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의 산업·통상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업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협상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글로벌 규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도 R&D와 자체적 대응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함

[부록그림 1] 제조업의 서비스화 과정



자료: Miroudot, S. and C. Cadestin (2017)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표 1] 주요국 디지털 정책 동향

국가	주요 정책/법제	연도	주요 내용
유럽 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2018	데이터 이전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참고 기준으로, 역외 기업에도 적용되어 글로벌 표준처럼 작용. 접근권, 삭제권, 데이터 이동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에는 설계단계부터의 보호(privacy by design) 의무 부과
	디지털 시장법 (Digital Market Act) /디지털 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	2022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알고리즘 투명성, 불법 콘텐츠 제거, 투명성 확립 등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
	데이터법 (Data Act)	2023	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용자와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클라우드 전환 촉진 및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을 규제
미국	CLOUD Act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2018	미국 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에 관계없이(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라 하더라도) 미국 사법당국의 합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법
	행정명령 14117	2024	‘우려국가에 의한 민감한 대량의 미국인 데이터 및 미국 정부 관련 데이터 접근 금지(Preventing Access to Americans’ Bulk Sensitive Data and United States Government-Related Data by Countries of Concerns)’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등 우려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제한하는 등 데이터 이전을 통제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음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사이버 보안법)	2017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해야 하며, 국외 이전 시 정부 보안심사를 의무화함
	데이터 보안법 (Data Security Law, DSL)	2021	데이터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규정하고 데이터의 분류, 등급보호체계, 데이터 수집·저장·처리에 대한 국가의 감독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PIPL)	2021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해야 하며, 국외 이전 시 정부 보안심사를 의무화함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약칭;데이터산업법)	2021	EU의 GDPR과 유사하게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명확한 동의, 최소 수집 원칙, 정보 주체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다만,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명분에 따른 정부 접근이 가능하며, 처리자가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 내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2023	EU GDPR 수준으로 규제 정비 및 적정성 평가 획득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 강화
일본	신뢰 기반 데이터 자유 흐름 (Data Free Flow with Trust, DFFT)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처음 언급.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보안 등에 대한 신뢰(Trust)를 전제로 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2022	EU GDPR과 유사한 틀을 도입하여 국제적 정합성 확보 2022년 개정으로 데이터 처리자 책임 강화 및 EU로 부터의 적정성 평가 획득

자료: GDPR 웹사이트(<https://gdpr-info.eu/>), DMA 웹사이트(<https://digital-markets-act.ec.europa.eu/>), 법무부 국제법무지원 해외규제모니터링 제1호(2024), 세계법제정보센터, KIEP 세계경제포커스 Vol.5(7), 국가법령정보센터, DFFT 웹사이트(<https://www.digital.go.jp/en/policies/dfft>) 바탕으로 저자 정리

[부록표 2] 세부 지표별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 추이

지표	연도	전세계	OECD국가	비OECD국가	한국
인프라 및 연결성 (infrastructure and connectivity)	2014	0.095	0.046	0.129	0.159
	2015	0.091	0.038	0.129	0.119
	2016	0.093	0.042	0.130	0.119
	2017	0.102	0.051	0.138	0.119
	2018	0.105	0.054	0.141	0.119
	2019	0.100	0.055	0.132	0.119
	2020	0.100	0.053	0.134	0.040
	2021	0.103	0.053	0.138	0.040
	2022	0.103	0.053	0.138	0.040
	2023	0.102	0.053	0.137	0.040
	2024	0.102	0.053	0.137	0.040
	5개년 평균(20-24)	0.102	0.053	0.137	0.040
전자 거래 (electronic transactions)	2014	0.034	0.029	0.038	0.021
	2015	0.033	0.029	0.036	0.021
	2016	0.031	0.028	0.033	0.021
	2017	0.030	0.028	0.032	0.021
	2018	0.028	0.027	0.028	0.021
	2019	0.027	0.027	0.026	0.021
	2020	0.025	0.027	0.024	0.021
	2021	0.025	0.027	0.024	0.021
	2022	0.025	0.027	0.024	0.021
	2023	0.025	0.027	0.024	0.021
	2024	0.025	0.027	0.024	0.021
	5개년 평균(20-24)	0.025	0.027	0.024	0.021
결제 시스템 (payment system)	2014	0.008	0.004	0.011	0.018
	2015	0.008	0.004	0.012	0.000
	2016	0.009	0.004	0.012	0.000
	2017	0.009	0.004	0.012	0.000
	2018	0.009	0.004	0.013	0.000
	2019	0.010	0.004	0.015	0.000
	2020	0.011	0.004	0.016	0.000
	2021	0.011	0.004	0.016	0.000
	2022	0.011	0.004	0.016	0.000
	2023	0.011	0.004	0.016	0.000
	2024	0.011	0.004	0.016	0.000
	5개년 평균(20-24)	0.011	0.004	0.016	0.000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14	0.008	0.002	0.012	0.000
	2015	0.008	0.002	0.012	0.000
	2016	0.008	0.002	0.012	0.000
	2017	0.007	0.002	0.011	0.000
	2018	0.006	0.002	0.010	0.000
	2019	0.006	0.002	0.010	0.000
	2020	0.006	0.002	0.009	0.000
	2021	0.006	0.002	0.009	0.000
	2022	0.007	0.002	0.010	0.000
	2023	0.007	0.002	0.010	0.000
	2024	0.006	0.002	0.010	0.000
	5개년 평균(20-24)	0.006	0.002	0.010	0.000

자료: OECD Data Explorer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표 3] 한국 기체결 FTA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 현황

분야	주요 요소	한-싱가포르	한-EU	한-페루	한-미국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국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한-중미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적 전송 무관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한시적)	의무	의무	의무							
	디지털 재화 비차별 대우		-	-		-	-	-	-										
	전자서명 전자인증	의무	협력	협력		의무	협력	-	의무	협력	-	-							
온라인 소비자 보호	종이없는 무역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온라인 소비자 보호					의무	-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의무		의무			노력									
국경간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스팸 메시지 규제			-	-	-	협력	협력	-	-	-	협력	협력						
	정보 국경간 이전 원활화					협력		협력	-			-							
	컴퓨팅 설비 현지화 금지	-	-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	-		-	-	-	-		-	-								
	인터넷 접근 및 이용 자유화				협력														
	인터넷 접속료 분담				-														
	인터넷 서비스 제공 · 사용자의 책임범위																		

자료: '디지털 무역 규범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재인용(재단법인 여시재, 2021)

국내 · 외 경제지표

1. 주요국 경제성장률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한국	2.7	1.4	2.0	1.0	1.5
미국	2.5	2.9	2.8	1.8	1.7
중국	3.1	5.4	5.0	4.0	4.0
일본	0.9	1.5	0.1	0.6	0.6
유로존	3.5	0.4	0.9	0.8	1.2

주 : 2025, 2026년은 IMF 전망치임

2. 주요국 환율

(단위 : 원)

	2022	2023	2024	'25. 7월	8월	9월
원/달러	1264.5	1288.0	1472.5	1387.0	1390.1	1402.9
원/100엔	945.6	912.3	948.8	932.4	945.5	646.6
원/위안	181.4	180.8	201.3	192.7	194.1	196.8
원/유로	1351.2	1426.6	1528.7	1579.6	1621.6	1644.5

주 : 말일 기준

3. 주요국 정책금리

(단위: %)

	2022	2023	2024	'25. 7월	8월	9월
한국	1.25~3.25	3.50	3.50~3.00	2.50	2.50	2.50
미국	0.25~4.50	4.50~5.50	5.50~4.50	4.50	4.50	4.25
중국	3.70~3.65	3.65~3.45	3.45~3.10	3.00	3.00	3.00
일본	-0.10	-0.10	-0.10~0.25	0.50	0.50	0.50
유로존	0.00~2.50	2.50~4.50	4.50~3.15	2.15	2.15	2.15

4. 주요 원자재 가격

(단위 : USD/bbl, p)

	2022	2023	2024	'25. 7월	8월	9월
국제유가	96.4	82.1	79.6	70.9	69.4	70.0
CRB 선물지수	277.8	263.8	296.7	299.8	302.35	

주1)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연평균, 월평균)

2) CRB 선물지수는 천연가스 · 금 · 구리 · 니켈 · 옥수수 · 밀 등 주요 원자재 선물가격 평균하여 산출(말일 기준)